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신설〉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5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신설	2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5.
- (3) 회 부 일 : 2025. 3.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II. 검토의견

1.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신설

- 개정안은 국가계획의 수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국가정신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제9조(국가정신건강위원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이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1)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요>

1. 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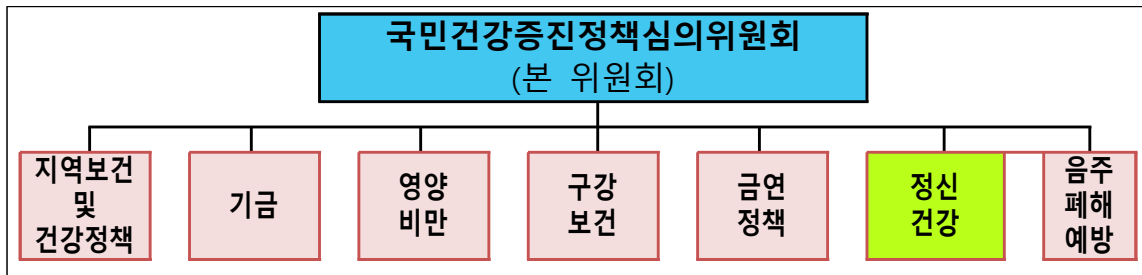
- (성격)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심의 기구
- (심의사항) 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② 둘 이상의 중앙부처가 관련된 건강정책조정,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등
- (구성) 위원장(복지부 차관) 포함 총 15명

2. 위원회 구성 현황

- (정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환경부 국장급 공무원 (7명)
- (민간) 예방의학, 건강증진 분야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7명)

3. 전문위원회³⁾ 운영 현황

- (목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설치
- (설치 현황) 7개 분야별로, 5 ~ 9 명의 전문가로 구성



* 자료: 보건복지부

1)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4)와 체계상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증진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반하여, 그 하위 개념인 정신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 수⁵⁾ 등 규모를 더 크게 조직하는 것은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 이내이며, 개정안에 따른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 수는 30인 이내임.

참고로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 제469호에 근거하여 2024년 6월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⁶⁾로서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정신장애인⁷⁾과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⁸⁾는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p. 8.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요 참조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소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위상 조정과 더불어 정신건강·자살예방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후 논의할 필요
행정안전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동 위원회 활용 가능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하고 위원의 직급을 과도하게 높지 않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존속 기한(최대 5년)을 명시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하여만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를 둘 특별한 근거나 필요성은 없어 보이며, 현행법 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위촉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인 자를 전체의 1/2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위촉위원 중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정신질환 분야로 수정해야 하고,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비율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

□ 혁신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방안

- (위상)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역할)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 목표 설정, 새로운 정책 발굴·기획, 의견수렴, 추진 점검 등 수행
- (위원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23인*(임기 2년, 연임 가능)
 - * *당연직 위원 1인(복지부장관), *당사자,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전문가 22인
 - * 본 위원 외에도 특별고문(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을 위촉하여 자문역할 수행
- ^{위원}위원장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위원}위원 대통령이 위촉, ^{간사위원}보건복지부장관
- (운영기간) '24.6.26.~'27.5.31.
- (운영형식)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
 - * 기타 현안 발생 시 위원장 결정, 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 가능
- (근거 규정)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69호)

□ 전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방안

- (위상)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 (위원회 구성) 기획, 의료·재활, 캠페인 전문위원회로 구성
- (위원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위원장이 추가 위촉 가능)
- (운영형식) 전문위원회별로 논의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

